



「科學技術人財 保護法 提案」

“A Proposal of legislation draft for the scientist and technologist treasure law”

金 崑 根*
Kim Suen Guen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立法促求案의 主要骨子 |
| 2. 立法促求案作成의 契機 | 5. 맷는말 |
| 3. 科學技術人財에 關聯된 現行國內法規 | 6. 主要參考文獻及資料 |

1. 머리말

科學技術者는 오로지 自己의 專攻分野와 關聯된 資格과 業務에 關한 國內法規는 常識程度로 알고 지내는 者가 大部分일것이고, 公職에서 法規를 많이 다루고 停年退職한者도 科學技術文化)의 傳統을 繼承시킬 能力を 가진者를 國家가 保護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지금까지 누구나 생각치 않았던 題目과 같은 立法案을 元老 및 大先輩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小生이 그 方案을 적어서 많은 분의 呼應과 協贊同調를 얻고 나서 當局이 立法을 促進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參考삼아 적는데, 文化財保護法(1982年 12月 31日, 法律第 3644號)의 第2條第2項 “無形文化財：演劇·音樂·舞蹈·工藝技術等 無形의 文化的所產으로서 歷史上 또는 藝術上 價值가 큰 것.”

文化保護法(1981年 4月 13日 法律第 3435號)의 第2章 學院(第3條부터 第16條까지) 第4條[機能] 第5條[會員의 種類及定數] 第6條[會

員의 選出] 第7條[會員의 資格等으로 되어 있는데 이 法의 第1條[目的] “이 法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保障하고 科學者와 藝術家의 地位를 向上시킴으로써 民族文化의 創造發展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先進化·國際化를 指向하고 있고 社會福祉向上政策을 폄고 있는 요즈음, 위의 두가지 現行法을 보는 科學技術者は 우리도 國家의 保護管理를 받아야 할 때가, 故고 停年退職하고도 健康管理를 잘하고 있는 元老先輩科學技術者中에는 國威宣揚과 國家에 功獻한 者가 老年에 社會의 疎外感과 더불어 車馬費도 제대로 自己힘으로 마련치 못하는 身勢로 轉落한 科學技術者中에서 文化傳統의 繼承에 必要한 者는 國家가 保護management를 하는 것도 立法化以前에 東洋의 美風道義가 아닐까 생각되게 되는 것이다.

2. 立法促求作成의 契機

2.1. 直接的인 動機

첫째, 技術士의 母法을 되찾자는 움직임이 表面化된 것은 1985年 9月 下旬頃에 技術士會에서

* 土木技術士(港灣 및 海岸), 成均館大工大講師

母法을 되찾기 위한 草案作成研究用役을 小生이遂行中, 技術士의 社會의 優待現況을 살피는 現行法의 關聯條項을 法典에서 찾다가 힌트를 잡게되어 構想하게 된 것이다.

둘째 國家技術士法草案(技術士會의 理事會가 1986年 1月 26日 通過分)에는 第5條[技術士業務] 및 第6條[기술士에 對한 優待]等에는 技術士業은 技術士만이 할 수 있게 하였고, 技術士의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適正한 維持와 그 就業 및 身分保障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은 國家가 講究하여야 한다는 條項을 읊미할 때 技術士資格證은 없지만 過去에 國家建設에 功獻한바 크고 國威宣揚을 한 榮光스러운 業績을 남긴 元老(停年退職後의) 科學技術者中의 文化繼承이 必要한者를 國家가 保護하고 社會의으로 優待하는 別

途의 立法이 있어야 함에도 누구하나 提議하는 者가 없길래 淺學非才의 小人이 생각하게 된 것이다.

2.2. 間接的인 動機

첫째 文化保護法(1981年 4月 13日, 法律第3435號)의 第2章 學術院(第3條부터 第61條까지)에서 보면 學問의 向上發展을 圖謀하고 科學者를 優待하기 위하여 學術院은 設置運營하고 있으며 終身으로 된 元老會員은 30人 以內로 制限하여 科學者의 元老代表機關으로 되어 있으나, 이 法에는 國家가 保護하고 社會의으로 優待한다는 條項이 名譽職이기 때문인지 全然 없다.

둘째 文化財保護法(1982年 12月 31日 法律第

표 2.1.

人間文化財의 事例리스트(SGK)

姓 名	性 別	重要無形文化財 番 號	內 容	備 考
宋 昌 士	男	3	民俗劇會男寺黨(속두각시 놀음)	74才 死亡 86.5.24
池 觀 龍	"	34	康羽발총	77才 死亡 86.4.22
宋 著 雄	"	46	螺鈿漆器(27個種目的 傳統工藝中의 하나)	技能保有 二代계
권 용 늑	"	47	화살기능	71才 死亡 86.5.10
千 相 源	"	55	小木匠	
朴 龍 基	"	60	壯刀匠	
朴 均 錫	"	63	복예우기(목수·皮匠·단청·조각 1人 4役)	
金 德 龍	"	64	豆錫匠	
金 錦 花	女	82	豐漁祭(巫女)	
姜 洛 昇	男	83	漁制출풍류	
沈 富 吉	"	?	螺鈿漆器의 韶음질	80才
金 奉 龍	"	?	螺鈿漆器의 출음질	84才
朴 季 順	女	3	속두각시놀음	52才(1986年 5月 現在)

出處: 日刊스포츠에서 取材하였으므로 이 외에도 많을 것임.

3644號)의 第2條第1項의 2: “無形文化財 : 演劇 · 音樂 · 舞蹈 · 工藝技術등 無形의 文化的所產으로서 歷史上 또는 藝術上 價值가 큰것”의 定義가 있고, 여기에 該當하는 人間文化財의 事例는 표 2.1과 같고, 名人혹은 達人의 境地에 이른 技能保有者이며 왜 이에 뭇지 않은 科學技術

人財(나중에 定義가 나옴)는 國家保護對象에서 考慮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데 對하여 刺戟을 받게된 것이다.

세째 1973年 4月某日 技術士會의 定期總會時(電氣會館에서) “實用工科技教育의 方向”(Vol 6, NO. 22 JUNE 1973 기술사誌 pp. 에

掲載함)이라는 論題로 講演時 人間文化財와 같아 技術文化財(俗稱)로서 國家保護가 必要하다는 것은 力說한바 있으나, 當時로는 法律常識의 稀薄과 社會의 霧圍氣造成이 되어있지 않았던 까닭으로해서 立法案을 미처 생각치 못하였다.

비째 科技處가 85年度에 作成立法案인 “科學技術革新促進法의 第47條내지 第52條에 이르러 科學技術人材의 養成과活用條項은 있어도 科學技術人財를 保護하고 社會의으로 優待한다는 條項이 없는데 對하여 構想하게 된 것이다.

3. 科學技術人財에 關聯된 現行國內法規

3.1. 科技處所管의 現行法과 立法案

科技處가 所管하는 主要한 現行法은 표 -3.1.

표 -3.1.

主要한 科學技術關係法 및 立法案리스트

(MOST 所管)

	法名	制定公布日	法號	主 要 內 容
1)	舊技術士法	1963. 11. 11	1442	※技術士의 資格만을 法制화함
2)	科學技術振興法	1967. 1. 16	1864	科學技術振興體制 確立과 財政措置의 講究
3)	技術開發促進法	1972. 12. 31	3095	技術開發準備金의 積立
4)	技術用役育成法	1973. 2. 5	2474	技術用役業體의 健全한 育成
5)	特定研究機關育成法	1973. 12. 31	2671	政府出捐研究機關의 保護育成
6)	韓國技術檢定公團法	1976. 11. 5	2897	※※技術資格檢定
7)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法	1980. 12. 31	3312	技術開發資金의 支援
8)	遺傳工學育成法	1983. 12. 31	3718	遺傳工學의 育成·研究·發展 및 基金運用管理
9)	科學技術革新促進法案	1985. 8. 24		한국경제신문에 發表됨. 現在立法推進中
10)	國家技術士法案	1986. 1. 26		(社)韓國技術士會의 理事會通過, 現在檢討中
11)	科學技術人財保護法促求案나오다.			
12)	學術振興法	1979. 12. 28	3205	韓國學術振興財團의 設立運營
13)	文化保護法	1981. 4. 13	3435	學院院 및 藝術院의 設立運營

※ 國家技術資格法이 1973. 12. 31 制定公布되면서 吸收廢法이 됨.

※※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法이 1981. 12. 31 制定公布되면서 吸收消滅 됨.

오늘날 많은 科學技術者들이 느끼는 것은 技術과 資格은 統轄(合)된 單一法이어야 한다는 것은 再三 읊미하고 當初의 舊技術士法을 日本에서 直輸入한 것은 지금, 後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制定公布된 技術과 資格에 關한 것을 考慮하면 다음과 같다.

과 같고,立案中인 法案으로는 科技處가立案하여 上程審議中에 있는 것은 「科學技術革新促進法案(全文 58條 및 附則)으로서 60年代·70年代 制定된 現行「科學技術振興法」 및 「技術開發促進法」을 二千年代를 指向하는 先進化의 새 時代의 要請에 따르기 위해 그 內容과 體制가 不充分하고 實效性이 微弱하기에 當局이 直接立案한 것이다.

1963年 11月 11日 法律 第 1442號로 制定公布된 舊技術士法은 1957年 5月 20日 法律第 124號의 日本技術士法을 거의 그대로 模倣하였던 것으로 이것은 元老大先輩이신 李鳳寅先生(國土開發)께서立案推進에 努力한 結果였고 그간 2次에 걸쳐서 改定된바 있었으나, 國家技術資格法의 制定公布가 1973年 12月 31日에 이루어지면서 吸收消滅되었다.

·建設業法(1958. 3. 11. 制定公布) :建設技術者甲類는 施工技術士로서 國家技術資格法에 1973年 12月 31日 資格만 吸收되었다.

·辦理土法(1961. 12. 23. 法律第 864號)에 의한 辦理土의 資格과 業務에 關해 法制화되어 있다.

·建築土法(1973. 12. 16 法律第 1536號)에 의

한建築士의 資格과 業務에 關해 法制化되어 있다.

· 導船法(1961. 12. 6. 法律第 812 號)에 의한 導船士(一名파이어)의 資格과 業務에 關해 法制化되어 있다.

· 國土利用管理法(1972. 12. 30. 法律第 2408 號)에 의한 土地評價士(法第29條의 2 : 土地評價士의 免許등, 法第29條의 3 : 土地評價事務所의 開設·登錄등)

위와 같은 立法事例를 볼 때 舊技術士法은 資格만 法制화한 것은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國家技術資格法의 制定公布도 科學技術者는 1974年 1月 1日부터는 法所管上으로 旣勞動者取扱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科技處로 還元되는 立法이 切實하다는 것은 科學技術者의 異口同聲으로 외치는 소리가 繼續되고 있는 實情이다.

· 科技處所管은 아니지만 科學技術者의 優待와 關聯된 現行法은 學術振興法과 文化保護法의 두가지뿐이고 科學技術人財와 같은 科學技術者를 國家가 保護하고 社會의 으로 優待하여 停年退職後에라도 最少限의 生活保障을 하므로서 國家에 功獻한者的 體面維持로서 餘生을 즐기고 同時に 科學技術文化의 傳統繼承으로 빛나는 科學技術의 傳統確立을 꾀하는 現行法이 有으로 세立法의 必要性은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3.2. 商工部所管의 中小企業振興法

1986年 4月 30日附 中央日報의 報道에 依하면 題目으로는 “大企業은 경영人·元老技術者를 中小企業諮詢役으로 活用 即, 「停年退職으로 물려난 引退經營人이나 元老技術者들을 모아 中小企業의 諮問役으로 活用하는 方案이 具體的으로 보색되고 있다고 한다. 中小企業振興公團은 不足한 經營·技術指導者를 確保하기 위해 最近關係法을 고쳐 『自然系大學을 卒業하고 現場經驗이 12年以上 있거나 同一職種에 20年以上 勤務한 사람들에게 技術指導士資格을 준다』고 한다.

中小企業振興公團에 登錄된 經營·技術指導士는 모두 3,490名인데 이중, 引退된 經營·技術指導士는 348名에 不過하며 年間 指導對象 中

小企業은 760個인데 現在人力으로는 절반밖에 指導를 못하고 있는 實情이라고 한다.

商工部는 現行 技術指導制度를 改善하기 위해 서는 指導人力을大幅增加시켜야 한다고 보고 年齡에 關係敘이 引退技術者 및 大企業前職員들을 中小企業諮詢役으로 活用하는 方案을 多角적으로 講究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參考로 中小企業振興法 및 同施行令의 關聯條項을 팔취해서 紹介한다.

이 法의 第27條[指導資格 및 基準의 作成]第2項 :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計劃에 따라 經營 또는 技術指導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指導士(이하 “指導士”라 한다)를 둔다.

第3項 : 第1項 및 第2項의 基準과 指導士의 資格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으로 정한다.

同施行令第29條[指導士의 資格]……技術指導士는 別表-2에 정한 資格基準에 해당되는 者로서 商工部에 登錄한 者로 한다.

別表-2. 經營指導士 및 技術指導士의 資格基準

經營指導士	-----
技術指導士	1. 自然科學分野의 博士學位所持者 2.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 및 技能長의 資格은 가진者와 技士一級으로 7年以上 實務에 從事한 者. 3. 大學 또는 師範大學에서 自然學科分野를 請義하고 있는 專任講師 以上의 教員 4. 專門大學에서 自然科學分野를 請義하고 있는 助教授以上의 教員 (5. 6. 項은 생략함)

商工部가 이 法施行令을 고쳐서 年令에 關係없이 元老技術者(引退 或은 停年退職者)의 活用으로 技術諮詢役의 길을 開放하고자 하는 이때에 科總傘下의 元老科學技術諮詢團의 推薦을 받은 團員의 社會에 再參與할 수 있는 機會를 法의으로 우선 立法化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3.3. 科學技術의 各學會의 定款(拔萃)

一生을 받쳤던 職場에 停年退職後(大學教授職

基準으로 滿65才) 社會의인 疎外感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自己專攻分野에 屬했던 學會를 한例로 들면 學會의 各種任員職에서 任期가 끝나면은 新年賀禮나 定期總會以外에는 學會에 별볼일 없고 한물간 사람 待接를 받게 되는 風土를 고쳐서 元老가 되더라도 自己所屬學會에 參與하는 社會的規範화가 促進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自身이 몇學會의 定款事例를 引用하여 보니 어떤 學會는 參與機會를 定款上 規定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다. 筆者는 東洋의 美德인 敬老思想과 科學技術傳統文化를 繼承하기 위해 元老科學技術者를 參與시켜서 理事會의 議決權을 附與하고 있는 參與理事制(建築學會)나, 參與會員(土木學會)制 같은 것을 垂範的으로 技術土會의 定款부터 改定할 것을 建議하는 바이며, 六十年代初葉의 現任員陣(特定짓지 않음)도 未及에 元老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社會의인 疎外感을 定款에서부터 除去하는 것이 科學技術者를 保護하는 첫걸이 될 것이다.

便宜上, 紙面關係로 參考삼아 技術土會, 土木學會, 建築學會, 測地學會, 空調學會, 纖維工學會等의 定款中 參與會員 或은 參與理事에 關한 條項中心으로 발췌 引用하여 여러讀者の 資料로 삼을뿐 批判의 對象이 아님을 再三強調함.

社團法人 韓國技術士會定款(발취)

(1977. 9. 6. 認可)
(1986. 4. 24. 一部改定)

第5條 (會員) 이 法人的 會員은 正會員 및 特別會員으로 한다.

第6條 (正會員) 正會員은 國家技術資格法 및 舊技術士法에 依한 技術土로서 所定의 登錄을畢한 者가 된다.

第7條 (特別會員) 特別會員은 科學技術分野의 學識과 德望이 높은 者中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會長이 委嘱한다. 다만 正會員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갖지 않는다.

第8條 (會員의 權利와 義務)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入하므로써 이 定款에 定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

第17條 (名譽職) ①이 法人에 名譽職으로 名譽會長과 顧問을 둘 수 있다.

②會長은 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學識과 德望이 높은 人士를 一定期間동안 名譽會長 또는 顧問으로 推戴할 수 있다. 다만, 顧問은 平生期間으로도 할 수 있다.

③歷任한 會長은 當然히 顧問으로 推戴되고 特別한 事由가 없는 한 平生期間으로 한다.

社團法人 大韓土木學會定款(발취) (1982. 5. 24) (改正認可)

第5條 (會員) 本會 會員은 參與會員, 正會員 特別會員, 名譽會員 및 學生會員의 5種으로 한다.

第6條 (參與會員) 參與會員은 다음의 資格을 具備하는 者中에서 代議員會가 推戴한다. 1年에 推戴할 수 있는 參與會員의 數는 會員數每千名當 2人으로 하되 會員數가 二千名 未滿일 때에는 每年 2人으로 한다.

(1) 正會員으로 20年 以上 經過하고 年齡이 滿 60 歲 以上인 者

(2) 土木技術向上에 功勞가 顯著한 者

第7條 (正會員) (삭제)

第8條 (特別會員) 特別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賛同하고 本會의 目的達成에 協助 또는 顯著한 功績이 있는 自然人 또는 法人으로서 理事會가 承認한 者로 한다.

第9條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土木工學 및 關聯科學技術分野에서 學識德望이 높고 卓越한 功績을 남긴 內外國人士中에서 代議員會의 決議로 推戴한다. 名譽會員은 會員이 갖는 모든 特權을 享有하되 入會金 및 年會費를 免除한다.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定款 (1983年 6月 11日 7次改定)발취

第6條 本會員은 다음과 같이 4種으로 한다.

1. 正會員
2. 準會員
3. 名譽會員
4. 特別會員

第7條 (會員資格) 各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名譽會員：建築系統 및 이에 關聯된 科學 技術分野에서 學識德望이 卓越한 者 또는 本學會 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內外國人中에 서 理事會의 決議로 推戴한다.
名譽會員은 會員이 갖는 모든 權利를 가지 며 入會金 및 會費를 免除받는다.
4. 特別會員：建築에 관계 있는 個人 또는 團體로서 本會의 目的을 贊助하는 者中 理事會의 決議로서 選定된 者

第13條 1. (名譽會長推戴) 前 會長中에서 功績 이 顯著한 분을 總會에서 名譽會長으로 推戴 한다.
2. (參與理事推戴) 本會前任 任員으로서 本會 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분을 總會 決議로 서 參與理事로 推戴한다.
3. 名譽會長은 모든 會議에 出席하여 議決에 參加할 수 있다.

社團 韓國測地學會定款 (발취 : 1984. 4. 12 改正)

第5條 (會員) 本會 會員은 正會員, 學生會員, 名譽會員 및 特別會員으로 한다.

第6條 (正會員) (삭제)

第8條 (名譽會員) 名譽會員은 測地學, 寫眞 測量學 및 地圖學과 關聯된 科學技術分野에서 學識과 德望이 卓越한 者 또는 本學會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內外國 人士中에서 總會의 決議로 推戴한다. 名譽會員은 會員이 갖는 모든 權利를 亨有하되 入會金 및 年會費를 免除한다.

第9條 (特別會員) 特別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目的達成에 協助 또는 顯著한 功積이 있는 自然人 또는 法人으로서 理事會가 承認한 者로 한다.

(社) 空調學會(1985. 3. 21. 改定)定款발취

第6條 (會員의 種類)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特別會員, 名譽會員 및 學生會員의 4種으로 한다.

第7條 (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資格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特別會員：特別會員은 空氣調和·冷凍工學 및 이에 關係 있는 團體로서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者.
4. 名譽會員：名譽會員은 空氣調和·冷凍工學 및 이에 關聯된 科學技術分野에서 學識과 德望이 卓越한 者로서 學會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會員에 對하여 代議員會의 決議로서 推戴한다.

(社) 織維工學會定款 (1986. 4. 28 改定) 발취

제5조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正 會 員
2. 準 會 員
3. 贊 助 會 員
4. 特 別 會 員
5. 名 譽 會 員

제8조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제9조 특별회원은 섬유공업 또는 이에 관련있는 단체나 개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10조 명예회원은 섬유공업에 관한 학문 기술로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다대한 공헌을 한 자.

제12조 찬조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와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제13조 명예회원은 평의원회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를 추대한다.

4. 立法促求案의 主要骨字

全文을 15條內至 20條程度로 構成되는 것으로 草案한 것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기로 한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元老科學技術者의 學術의 活動의 積極的支援育成과 科學技術傳統文化의 繼承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므로서 學術發展을 促進하여 國家나 社會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指定 科學技術人財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公職에서 停年退職引退後 滿 75 才가 된 國

- 家에 功獻한 元老科學技術者
 2) 前項에서 綜合所得申告에 未達하는 科學技術者
 3) 自活生計가 困難한 科學技術者
 4) 國家에 功獻한 科學技術者로서 國家가 保護하고 科學技術文化의 傳統繼承에 必要한 科學技術者
 5) 其他, 科學技術人財로서 國家가 保護하고 社會的으로 優待해야 할 國家에 功獻한 實績을 가진 科學技術者
 第3條[科學技術人財의 保護]
 第4條[科學技術人財의 保有資料의 活用]
 第5條[科學技術人財審議委員會의 構成]
 第6條[指定科學技術人財의 移民禁止]
 第7條[科學技術人財의 欠格事由]
 第8條[科學技術人財의 活用과 文化繼承]

第9條[給與金 및 補償金]
 第10條[指定科學技術人財의 優待]
 第11條[學術研究를 위한 大學과 研究團體의 活用]
 ※ 以下省略함.

4.1. 考慮對象이 되는 科學技術人財

우선 考慮對象이 될 수 있는 것은 受賞者나, 그 審查委員中에서 考慮할 수 있을 것이며, 1968 年度 科總이 始作한 科學技術受賞分布表는 別添表-4.1. 과 같고 아울러 科學의 날 行事에서 受賞한 科學技術振興有功者褒賞에서도(別添表-4.2 要参照)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1986年5月1日 發足한 元老科學技術諮詢團에 加入申請을 한者中에서 많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4.1.

科學技術賞受賞分布

(科總)

구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금속	화학	화공	조선	약학	의학	물리	섬유	생물	생화학	농학	지질	식물	조림	통신	기타	계
'68	1	—	—	1	1	—	1	—	1	—	1	—	—	1	—	—	—	—	—	3	10
'69	1	2	—	—	—	—	—	—	—	1	1	—	—	—	2	1	—	—	—	2	10
'70	1	1	—	—	1	—	1	—	1	1	—	—	—	—	1	—	—	—	—	3	10
'71	1	—	—	—	—	1	1	1	1	2	—	1	—	—	—	—	—	—	—	2	16
'72	—	1	—	1	1	—	—	—	1	1	2	—	—	1	1	—	—	—	—	—	9
'73	1	—	—	—	—	1	—	—	—	1	1	—	—	—	—	—	—	—	—	4	8
'74	—	1	—	—	1	—	—	—	1	—	—	—	1	—	1	1	—	—	—	—	6
'75	—	—	1	—	—	1	—	—	—	—	—	—	—	—	—	—	—	—	—	1	3
'76	—	—	—	—	—	—	1	—	—	—	—	—	—	—	—	—	1	—	—	1	3
'77	—	—	—	—	—	—	1	1	—	—	—	—	—	—	—	—	—	—	—	1	3
'78	1	—	—	—	—	—	—	—	—	—	—	—	—	—	—	—	—	1	—	1	3
'79	—	1	—	—	—	—	1	1	—	—	—	—	—	—	—	—	—	—	—	1	4
'80	—	—	—	—	—	—	—	—	—	—	—	—	—	1	—	—	—	1	1	3	
'81	—	—	—	—	—	—	—	—	—	—	—	—	—	—	1	—	—	—	1	3	
'82	1	—	—	—	—	—	—	—	1	—	1	—	—	—	—	—	—	—	—	1	4
'83	—	—	1	—	—	—	—	1	—	1	—	—	—	—	1	—	—	—	—	1	4
'84	—	—	—	—	—	—	—	1	1	1	—	—	—	—	—	—	—	—	—	1	4
'85	—	—	—	—	2	—	—	—	—	—	1	—	—	—	—	1	—	—	—	1	5
'86	2	—	—	—	—	—	—	—	—	—	—	—	—	—	1	—	—	—	—	1	4
계	9	6	2	2	6	5	7	3	7	7	7	1	1	3	9	3	1	1	1	15	106

出處：科學의 날行事關係資料와 科學의 날年度別資料에서 繫計함.

표 -4.2.

科學技術振興有功者褒賞現況

등급		'75 (8회)	'76 (9회)	'77 (10회)	'78 (11회)	'79 (12회)	'80 (13회)	'81 (14회)	'82 (15회)	'83 (16회)	'84 (17회)	'85 (18회)	'86 (19회)	계
국민훈장	무궁화장	—	—	—	—	—	—	4	—	—	—	—	1	5
	보관장	—	—	1	1	1	1	2	7	4	5	6	5	33
	동백장	—	2	3	1	1	1	2	7	6	7	12	10	52
	목련장	—	—	1	3	2	4	4	16	6	5	5	6	52
	석류장	—	—	—	1	2	2	5	14	8	5	7	8	52
	소계	—	2	5	6	6	8	13	48	24	22	30	30	194
산업훈장	금탑	—	—	—	—	—	—	—	—	—	—	—	—	—
	은탑	—	—	—	—	—	—	—	—	—	—	—	1	1
	동탁탑	3	4	3	1	1	—	3	—	3	5	3	3	29
	철탑	—	—	2	2	4	—	2	—	2	2	3	4	21
	석탑	—	—	—	3	2	2	3	—	3	4	5	5	27
	소계	3	4	5	6	7	2	8	—	8	11	11	13	78
포상	국민산업	—	—	—	3	3	3	5	15	5	9	6	8	57
	소계	—	—	—	5	5	3	7	15	7	9	9	12	72
	대통령	—	—	5	5	5	7	2	6	7	5	7	7	56
포장	국무총리	—	—	7	3	4	5	4	11	3	6	3	3	49
	장관	—	—	11	17	9	26	31	28	—	—	—	—	122
	소계	—	—	23	25	18	38	37	45	10	11	10	10	227
총계		3	6	33	42	36	51	65	108	49	53	60	65	571

出處：科學의 날行事關係資料과 科學의 날年度別資料에서 集計함。

4.2. 元老科學技術諮詢團의 目的·事業方向과 내용의 概要

別添된 표-4.2.와 같이 매우 積極的이고 健康管理가 잘되어 있는 科學技術者는 元老가 아닌 壯年으로 再活用이 可能하고도 남을 것이며 國寶的인 科學技術人財를 이 社會가 熟知하고 諮問的인 再活用이 國益에 違背되지 않을 것이니 現職者의 再考吟味가 學界보다 業界에서 더욱 大眼識을 擴大해주시기를 期待한다.

표-4.2. 元老科學技術諮詢團의 目的·事業方向과 내용(발취)

出處：科總

1. 목적(운영규정인 第1條)

원로과학기술 자문단은 국내외 원로과학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고급인력의 활

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사업 방향(운영규정안 第5條)

- 가. 국내외 고급인력의 활용 극대화
- 나. 산·학·연 공동연구 체제의 구현
- 다. 국내외 정보 Network 체제구축
- 라. 산업체 기술개발을 위한 자문체제 확립

3. 사업 내용

- 가. 산업체의 애로 기술 전수 및 개발지도
- 나.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인력 충월 알선 및 자문
- 다. 선진국 연구소 및 공장 견학 알선
- 라. 과학기술용어 제정, 과학기술문헌 발간 감수
- 마. 대학·연구소의 연구활동지도, 자문
- 바. 과학기술정책 자문·WORKSHOP, SEMINAR, 자료조사, 대학특강

표-4.3.

元老科學技術諮詢團人員現況表 (1986. 5. 17 現在)

部 門 別	工 學						理 學	農 水 產	保 健	綜 合	計
人 員 數	97						4 3	4 4	5 9	9	252
分 野 別	電 氣	土 木	纖 維	化 工	機 械	其 他					
內 部 人 員 數	19	11	11	10	9	37					

出處：科總

- 註記 1) 海外居住元老科學技術者는 含有되어 있지 않음
 2) 앞으로 約 500名 以上으로 늘어날 것으로豫想됨
 3) 諮問團人員中 約 70%가 停年退職大學教授임.

못합니다.

爲政當局이願하신다면立法案을元老科學技術諮詢團의審議를거친뒤에奉仕的精神을發揮해서提出할準備가되어있음을添言합니다.

5. 맺는 말

이案은 어디까지나筆者가國家技術上法의草案者로서 그必要性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 쓰게 된 것이며 이促求案을 쓰는途中에元老科學技術諮詢團의發足事實을 알게되어科總常任顧問이신金東一博士님과元老科學技術諮詢團의副團長이신朴禧善先生님에게 이原稿의執筆內容을事前에 아무關係없이쓰게된것을諒解를 얻었으며, 이案中에 혹시 잘못된點이있더라도會員其他識者的高見을듣기위한것이니아무私心이없다는것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科學의날資料를提供해주신科總事務局의振興部協力課의金正會氏에게 고마운마음금치

6. 主要參考文獻 및 資料

- 6.1. 法典, 1985年趙相元／編著玄岩社發刊
- 6.2. 科學의날行事關係資料1983年版科總
- 6.3. 기술사誌 Vol. 19, No. 1 MAR. 1986, pp. 43~51 “國家技術土法의草案”, 金嶗根
- 6.4. 各種의國內日刊紙“日刊스포츠, 中央日報等其他新聞”에서스크랩한것
- 6.5. 各學會의定款資料